

발 간 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

20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446호)』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2004년 1월부터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 표준품셈의 제·개정 및 연구·조사, 해석, 보급 등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기준으로 매년 일부 공종의 제·개정을 통해 각 발주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건설공사 다양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및 보급, 기계화 시공 확산 등의 건설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셈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표준품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체계적·합리적 운영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 및 건설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표준품셈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한 지난 1년간의 결과물을 모아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면서, 본 표준품셈이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실무자들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본 표준품셈의 발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원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건설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에 주어진 사명의 적극적 수행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이 승 우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2003.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고속철도 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 단체의 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공사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또는 대한측량협회장(이하 “관련협회의 장”이라 한다)
-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제7조(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 2. 실적공사비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 3. 실적공사비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 ①산하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후보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5월말과 11월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산하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건설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실적공사비 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 심의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 단가가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10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11조(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체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특정 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산하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산하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품셈의 제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품셈의 확정)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적공사비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 ②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건설교통부에서 토목·건축·기계·측량부문의 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품셈 제정경위

- '68. 8. 26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
(주관 : 예산관리실에서 검토)
- '70. 1. 16 '70년도 표준품셈의결(680종목)
- '70. 1. 20 '70년도 표준품셈 시행
- '71. 1. 23 '71년도 표준품셈 시행(289종목)
- '71. 11. 13 전기공사 표준품셈 72종목 검토
- '72. 1. 17 '72년도 표준품셈 시행(352종목)
- '73. 1. 17 '73년도 표준품셈 시행(363종목)
- '73. 9. 14 대통령 특별지시로 미제정품셈 대폭 보완(307종목 신설)
- '73. 12. 28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기계공사품셈보완 종합심의
- '74. 1. 19 '72년도 표준품셈확정(670종목)
- '74. 11. 30 '75년도 표준품셈확정(910종목)
- '75. 12. 24 '76년도 표준품셈확정(1,236종목)
- '76. 12. 6 제36차 경제장관회의(76.12.1)의 의결에 따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표준품셈 업무를 각부처로 이관
토목, 건축은 건설부에서 담당(930종목)
- '76. 12. 20 '77년도 표준품셈확정(944종목)
- '77. 12. 17 '78년도 표준품셈확정(946종목)
- '78. 12. 5 '79년도 표준품셈확정(951종목)
- '79. 12. 6 '80년도 표준품셈확정(953종목)
- '80. 11. 29 '81년도 표준품셈확정(954종목)
- '81. 12. 10 '82년도 표준품셈확정(959종목)
- '82. 12. 10 '83년도 표준품셈확정(986종목)
- '83. 12. '84년도 표준품셈확정(991종목)
- '84. 12. '85년도 표준품셈확정(1,091종목)
- '85. 12. '85년도 표준품셈확정(1,025종목)
- '86. 12. '87년도 표준품셈확정(1,038종목)
- '87. 12. '88년도 표준품셈확정(1,060종목)
- '88. 12. '89년도 표준품셈확정(1,306종목)

- '89. 1. 1 기계설비표준품셈업무를 상공부 국립공업시험원에서 건설부
기술관리실로 이관
- '89. 12. 20 '90년도 표준품셈확정(1,338종목)
- '89. 12. 15 '91년도 표준품셈확정(1,375종목)
- '91. 12. 11 '92년도 표준품셈확정(1,408종목)
- '92. 12. 15 '93년도 표준품셈확정(품셈체계화포함, 1,428종목)
- '93. 12. 23 '94년도 표준품셈확정(1,457종목)
- '94. 12. '95년도 표준품셈확정(1,476종목)
- '95. 12. '96년도 표준품셈확정(1,493종목)
- '95. 12. 28 동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부문) 업무를 건설교통부에
서 대한건설협회(표준품셈관리단체)로 이관
- '96. 12. 17 '97년도 표준품셈확정(1,501종목)
- '97. 12. 29 '98년도 표준품셈확정(1,519종목)
- '98. 12. 30 '99년도 표준품셈확정(1,432종목)
- '99. 12. 31 2000년도 표준품셈확정(1,537종목)
- '00. 12. 21 2001년도 표준품셈확정(1,552종목)
- '01. 12. 20 2002년도 표준품셈확정(1,554종목)
- '02. 12. 23 2003년도 표준품셈확정(1,574종목)
- '03. 12. 23 2004년도 표준품셈확정(1,584종목)
- '04. 1. 1 동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설비부문)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품셈관리기관)으로 이관
- '04. 12. 31 2005년도 표준품셈확정(1,611종목)

품셈체계화에 따른 용어변경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넷	너트	에틸렌	에틸렌
넷블	니블	에멀전	에멀션
닥트	덕트	엑스카베이터	엑스커에이터
데릭크	데릭	오우거	오거
덤편	덤편	와샤	와셔
덤편	덤편	유닛트	유닛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	윈도우	윈도
디젤	디젤	잭크	잭
로우푸	로프	조인트	조인트
라디에타	라디에이터	첼머	체임버
라인마아커	라인마커	카바이트	카바이드
램머	램머	카타	카터
로우드	로드	코우크스	코크스
로울	롤	콘베이어	컨베이어
로트	로드	콘트롤러	컨트롤러
루우핑	루벳팅	콘트롤러	컨트롤러
리벳트	리벳팅	콕크	콕
리벳팅	리벳팅	컴프레샤	컴프레서
릴퍼	리퍼	크릿셔	크러셔
매캐덤	머캐덤	크롤러	크롤러
모르터	모르타르	크립	클립
모우터	모터	테르밋트	테르밋
바나	버너	트래프	트랩
바켓트	버킷	판넬	패널
백호우	백호	객케이지	패키지
버어지	바지	펌프	펌프
베로스	벨로스	프레시블	프레시블
변	벨브	프랜지트	플랜지트
보어링	보링	피더	피더
보이라	보일러	피치	피치
보울트	볼트	핻다	해더
브레이카	브레이크	핻머	해머
블록	블록	핻퍼	호퍼
쇼벨	셔블	후로	플로
스테인레스	스테인리스	핸드	핸들
슬리프바	슬립바	휠러	휠러
신나	신나	휠터	필터
써비스	서비스	휠터	필터
알루미늄	알루미늄	휠터	필터
양카	앵커	휠터	필터